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·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,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, 과학기술·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,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(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부처 명칭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0. 00. ~ 1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외교부령 제 호

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환경부장관”을 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 부지침) 영 제6조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 부지침은 외교부장관이 <u>환경부</u> <u>장관</u> 과 협의하여 정하고,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.	제3조(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 부지침) ----- ----- ----- <u>기후에너지환경부</u> <u>장관</u> ----- -----.